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71
----------	-------

발의연월일 : 2026. 9. 1.

발 의 자 : 이언주 · 박범계 · 윤준병
오세희 · 안태준 · 남인순
조계원 · 장철민 · 조승래
김현정 · 이수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을 창업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창업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 CEO의 출산·육아로 인해 경영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실질적인 지원기간이 단축되어 다른 창업자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상 여성의 창업지원 특례로서 창업기업의 대표자인 여성의 출산·육아 기간은 창업지원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여성창업자의 모성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중소기업부장관은 여성창업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의 창업기업과 제3호의2의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 계산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12조제2항의 창업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제39조제5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기준을 정하는 경우 대표자인 여성의 출산·양육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기간의 인정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양육기간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창업지원사업을
을 공고하거나 창업기업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신설> <신설>	제8조(여성의 창업지원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창업자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의 창업기업과 제3호의 2의 국외 창업기업의 범위 계산을 포함하여 같은 법 제12조 제2항의 창업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제39조제5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기준을 정하는 경우 대표자인 여성의 출산·양육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양육기간의 인정범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을 준용한다. ③ ~ ⑤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